

	교직원 보수 규정		문서번호	3-2-29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1/1	관리 부서	사무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호봉제 교직원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③ 연봉제 교직원의 연봉은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봉제 교직원 이외의 자인 겸임, 초빙교원, 임시직 직원 등의 급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 및 곤란성과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한 학년도 또는 년 단위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4. ‘호봉제’라 함은 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 등을 적용 받는 자를 말한다.
5. ‘연봉제’라 함은 호봉제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수와 지급

제4조(호봉확정) 조항 삭제

제5조(보수 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교직원의 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연봉제 교직원 및 특수신분교직원은 별도의 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전항 이외에 계약에 의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교직원의 보수책정 시 교직원업적평가의 교원품위에 관한 징계 사항 등을 반영한다.

	교직원 보수 규정		문서번호	3-2-29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2/1	관리 부서	사무처

제7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감봉 등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일수에 관계없이 당해 월봉을 전액 지급한다.

제8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휴직 및 정직기간 중의 보수는 해당자에 한하여 그 기간이 3월 이하의 자는 봉급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3월 초과 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 산후 휴가 3개월 중 마지막 해당 월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해외장기연수 1년 기간 동안의 보수는 7할을 지급한다.

제9조(징계, 대기기간의 보수) ① 감봉 징계처분 기간의 연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출근정지 또는 정직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및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전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보수의 감액) 교직원의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보수 일액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장 제 수 당

제11조(수당의 지급)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이외에 직무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종류) ①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근수당
2. 보직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근속수당

	교직원 보수 규정		문서번호	3-2-29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3/1	관리 부서	사무처

5. 가족수당
 6. 학생지도비
 7. 자녀학비보조수당
 8. 정액급식비
 9. 명절 휴가비
 10. 기타 특별성과금
- ② 제1항의 수당에 대한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제한) ① 정직, 직위해제, 해외연수, 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가, 병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장 연봉 및 수당

제14조(연봉결정)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원의 경력, 학교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연봉조정) ① 연봉의 정기 조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하여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 ② 연봉의 수시 조정은 연봉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사상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2. 본 대학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경우
 3. 기타 대학에서 연봉조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본생활 보장금적인 성격의 임금으로 매년 물가인상율과 본 대학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7조(성과연봉) 조항삭제

	교직원 보수 규정		문서번호	3-2-29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4/1	관리 부서	사무처

제18조(기본 연봉외 급여) 연봉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급사유 발생시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속수당
2. 직급보조비
3. 관리업무수당
4. 보직수당
5. 연구보조비
6. 명절휴가비
7. 학생지도비
8. 정액급식비
9. 교통비
10. 기타 특별성과금

제19조(포괄연봉제) 직무 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인 동의 하에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준수 의무) ① 교직원은 자신의 보수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보수를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의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

제21조(퇴직자의 연봉지급) 연봉근로계약자 중 퇴직한 연봉제 교직원의 퇴직 후 잔여연봉 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